



제 432 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시설 확대〉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24호)
- 이건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498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가. 서범수의원안

1. 제 안 자 : 서범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2. 09.
3. 회 부 일 : 2025. 12. 10.

나. 이견태의원안

1. 제 안 자 : 이견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2. 22.
3. 회 부 일 : 2025.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서범수의원안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놀봄센터’는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어

린이통학버스 운행이 불가능함. 이로 인해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어린이의 경우 놀봄센터 이용이 어려워 교통안전과 돌봄권 보장 측면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거점형 놀봄센터와 같은 어린이를 교육하거나 돌보는 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과 돌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카목 신설).

나. 이 건 태 의 원 안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의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을 말함.

그런데 각 지역 교육청에서 운영중인 ‘한국어랭귀지스쿨’ 등은 실질적으로 이주배경학생의 교육·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이로 인해 원거리에서 해당 교육기관에 통학을 하는 학생이나 취약계층 아동들이 안전한 통학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교육권과 복지권 보장에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복지 시설’을 추가하여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기관,

장애아동 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나 기관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거리 학생과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권·복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카목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들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는 포괄적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2조제23호카목 신설).

[illegible]

현행	서범수의원안	이건태의원안
자동차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4조제3항 에 따른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의 한 정면허를 받아 어 린이를 여객대상 으로 하여 운행되 는 운송사업용 자 동차를 말한다.	----- ----- ----- ----- ----- ----- ----- -----.	----- ----- ----- ----- ----- ----- ----- -----.
가. ~ 차. (생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가. ~ 차. (현행과 같음)
<신설>	카. 그 밖에 어린이 를 교육하거나 돌보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 설	카.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 는 교육 및 복 지 시설
24. ~ 34. (생략)	24. ~ 34. (현행과 같음)	24. ~ 34. (현행과 같음)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어린이(13세 미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그 대상 시설을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음(제2조제23호).¹⁾ 이는 어린이

1)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

통학버스 제도가 어린이의 생명·신체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일정한 공공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갖춘 시설로 그 대상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와 같이 현행법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시설을 중심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을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교육·돌봄 환경의 변화로 법제화되지 않았거나 행정적 개념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증가하면서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²⁾

특히 교육청이 직접 관여하여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³⁾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없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통학버스 운행을 허용해 오고 있는 상황임.⁴⁾

- | |
|---|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
|---|

2) 예를 들어 방과후 돌봄은 '초등돌봄교실(2011년) → 온종일 돌봄체제(2016년) → 늘봄학교(2022년)'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주아동 지원사업은 지자체·기관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혼용되고 있어 법률로 특정하기 곤란한 실정임.

3)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교 내 돌봄교실 외에도 지역사회 연계형 돌봄 모델로서 교육청 주관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거점형 늘봄센터는 학교 밖 별도 공간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단위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2025년 12월 기준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에서 거점형 늘봄센터 87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 중 학교 밖 운영시설은 26개소임.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에서는 79대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음.

4) 경찰청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한시적으로 거점형 늘봄센터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2024. 5. 1. ~ 2025. 4. 30., 2025. 5. 9. 재연장).

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통학버스 운영을 요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주배경학생 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등도 실질적으로는 어린이를 정기적으로 교육·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교육·돌봄 접근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전국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현황(2025년 말 기준)]

시설 유형	신고 대수	비율	「도로교통법」상 근거
학원	48,141	33%	제2조제23호 다목
어린이집	36,141	25%	제2조제23호 나목
체육시설	20,386	14%	제2조제23호 라목 ⁵⁾
유치원	19,756	14%	제2조제23호 가목
초등학교	14,220	10%	제2조제23호 가목 ⁶⁾
놀봄센터	79	0.05%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한시적 허용
기타(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6,710	5%	제2조제23호 마목·바목·차목
합계	145,433	100%	

※ 자료: 경찰청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는 어린이의 생명·신체 안전과 직결되는

5) 체육시설법 중 체육도장에 해당하지 않는 주짓수, 특공무술학원 등은 어린이통학버스 적용제외

6)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지 않는 대안교육기관은 어린이통학버스 적용제외(총 대안교육기관 253개교 중 초등학생 재학시설 137개교 제외)

사항으로서,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사전 신고 의무, 차량 도색·표지 등 엄격한 차량 요건, 승·하차 시 점멸등 작동, 좌석안전띠 착용 확인, 보호자 동승 또는 직접 확인, 운행 종료 후 하차 여부 확인 등 강화된 안전의무와 관리책임을 부과하는 만큼, 대상시설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확대할 경우 안전관리 및 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7)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⑥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에서처럼 대통령령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시설을 정할 경우에는, 운영주체의 공공성, 인·허가 또는 등록 여부, 어린이를 정기적·반복적으로 교육·보호하는 시설인지 여부, 관계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교육·돌봄 시설의 개념과 명칭이 다양하게 혼용되어 법률로 특정하기 곤란한 현실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을 통한 탄력적 지정 방식에는 공감하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각 목(가목부터 차목까지)에서 지정하는 시설에 준하는 교육 및 복지시설로 한정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 추진 및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통학버스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다만 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인력 소요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4

[참고자료] 1. 어린이통학버스 지정 시 법적 의무

구 분	준 수 사 항	처벌기준
통학버스 운영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해당하는 시설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경찰서장에 신고 후 운행. 미신고 운행시 (제52조 제1항) ▶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제52조 제3항) * △자동차안전기준(자동차규칙)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	과태료 30만원
	▶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제53조 제3항) ▶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제53조 제6항)	형사처벌
	▶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제52조 제2항)	과태료 3만원
	▶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하고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제53조 제7항) ▶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수자 운전 및 동승보호자 탑승 금지(제53조의3 제3항)	과태료 8만원
통학버스 운전자	▶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제53조 제1항) ▶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제53조 제2항)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제53조 제4항) ▶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제53조 제5항)	형사처벌
	▶ 어린이 안전띠 착용(제53조 제2항)	과태료 6만원
동승 보호자	▶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시 내려서 안전확인, 좌석안전띠 착용 등 어린이 보호 조치 (제53조 제3항)	처벌 규정 없음
일반 운전자	▶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차로)는 일시정지 후 서행(제51조 제1항) ▶ 중앙선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반대방향 진행 차량 일시정지 후 서행(제51조 제2항) ▶ 어린이가 타고 있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제51조 제3항)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승용차 기준)
	▶ 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위반(제52조 제4항)	범칙금 3만원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 안전교육 이수 의무(법 제53조의3, 시행령 제31조의2) - 신규 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 받아야 하며, 이수자 교육확인증 시설·자동차 내 비치 -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교통안전교육 2년 이내 이수 - 교육기관 : 도로교통공단, 시설관리 주무 기관의 장 - 교육 이수자 교육확인증 발급, 시설·자동차 내 비치	과태료 8만원 (교육감·지자체장)

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현황

○ 전국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수 및 시설 유형별 현황('25년 말 기준)

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체육시설	사회 복지시설	아동 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36,141	19,756	48,141	14,220	1,876	20,386	442	2,834	685	
145,433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 복지관	공공 도서관	유아교육 진흥원	시도 평생교육 진흥원	시군구 평생 학습관	대안 학교	외국인 학교	교 습 소	늘 봄 센터
	142	12	3	33	13	31	41	313	285	79

○ 시설 유형별(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통학버스 운영 비율

총 계	총 계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기타
대수	145,433	48,141	36,141	20,386	19,756	14,220	6,789
비율	100%	33%	25%	14%	14%	10%	5%